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24
----------	-------

발의연월일 : 2026. 3. 9.

발 의 자 : 김한규 · 이소영 · 김동아
문대림 · 임미애 · 진선미
문정복 · 김원이 · 강준현
위성곤 · 전진숙 · 김태년
박상혁 · 김종민 · 이주희
허성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역지자체 간 초광역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3특 체제’의 한 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가지게 될 경우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신설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3편 제1장 제2절에 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165조의3(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65조의4(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4.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로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7조제1항 중 “관광·통과”를 “관광·교육·연구·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격을 부여하거

나 관련 비자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편 제2장에 제2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0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주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제주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편 제3장 제1절에 제220조의2부터 제22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0조의2(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0조의3(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0조의4(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0조의5(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0조의6(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220조의7(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②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제주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제주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와 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0조의8(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실증 및 재교육 과정

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제220조의9(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20조의10(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편 제3장 제3절(제234조의2부터 제234조의1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④ 이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 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
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

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
영

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활동을 위한 재원 출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

제2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4조의2(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
·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제4편 제1장 제1절에 제256조의2 및 제2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6조의2(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256조의3(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제주자치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4편 제1장 제2절에 제266조의2부터 제26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66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각종 사업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4(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① 도지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의 신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제2장에 제294조의2부터 제294조의15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294조의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동향과 발전 전망
3. 제주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4조의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제주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다.

제294조의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4조의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의 권한으로 한다.

제294조의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4조의7(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 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도지사는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94조의8(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9(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0(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

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4조의12(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도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94조의13(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4(수산물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의 수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물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구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구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구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 등의 구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5(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금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6조의2, 제296조의3, 제304조의2부터 제304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6조의2(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영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제296조의3(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4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제주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4조의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4조의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04조의5(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의6(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304조의7(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4조의8(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주자치도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도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4조의9(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제주자치도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04조의10(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4조의11(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 조례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관련 사업

7.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전 지원 사업

제304조의12(신·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4조의13(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 ① 제주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제4편 제3장에 제305조의2부터 제305조의2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5조의2(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305조의3(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제주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5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소재·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생산·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5조의4(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

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
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305조의5(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
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
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6(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305조의7(녹색융합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 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8(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5조의10(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11(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된 국방산업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의 육성
4.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헬스산업
5. 나노반도체 산업
6. 로봇산업
7.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업
9. 세라믹 산업, 첨단·희유소재 산업
10. 인공지능·가상융합산업
11. 코스메틱 산업
12.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13. 삼차원프린팅산업
14. 광융합산업
15. 해양융합산업
16.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장비산업
17.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제305조의12(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305조의13(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 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을 말한다)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제305조의14(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제주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5조의15(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5조의16(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 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 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 실증 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제305조의17(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

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추론·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5조의18(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5조의19(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① 도지사는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05조의20(디지털 트윈 정책 시뮬레이션) ① 제주자치도는 예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책 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도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한다.

제305조의21(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2(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

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5조의2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제주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제305조의25(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6(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제주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용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7(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06조의2부터 제30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6조의2(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중증·응급·분만·소아·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

의료기관의 운영 안정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자치도 소재 지역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06조의3(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06조의4(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 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06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제4편 제4장 제2절에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40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제340조의3(제주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제주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0조의4(제주특별자치도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0조의5(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0조의6(청년지원정책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청년유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편 제5장 제1절에 제3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6조의2(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

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제6장에 제4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5조의2(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편 제7장제1절에 제426조의3부터 제426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426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제주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426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26조의5(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물류비 지원

2.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지원
3. 상수도·전력·통신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4. 주거환경개선, 귀촌·귀어 촉진을 위한 주거·이주 지원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6조의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 행정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426조의7(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427조의3부터 제427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427조의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27조의5(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27조의6(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주자치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39조의2 및 제4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9조의2(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

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39조의3(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4·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제234조의2부터 제234조의14까지는 공포 후 1년 경과 후에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른 설립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제주과기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과기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준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제234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임원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준비위원회는 제주과기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는 준비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⑥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4조(국가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16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65조의3(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직접 투자) ①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u>

<신 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기업의 출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 한도, 보고 및 감사 등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65조의4(지역투자공사 설립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내 투자자본 조성 및 벤처·신산업 금융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투자공사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5조의5(민간투자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에 따른 부대사업 시행
4.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량·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부대사업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유료도로법」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또는 장애인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통행료 감면 비용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7.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 관광·교육·연구·통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무부장관은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에서

<신 설>

④ (생 략)

<신 설>

교육·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과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
0조에도 불구하고 입국 절차 및
체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제234조의2에 따른 제주국제
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창업 및 취
업을 희망하는 경우, 도지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창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 특별 체류 자
격을 부여하거나 관련 비자 취
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0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
지사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
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외
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②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주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신 설>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제주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20조의2(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

<신 설>

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0조의3(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선발 특례)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전형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대상 지역은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성화 학과의 지정기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요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20조의4(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국가균형

<신 설>

발전 성장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 및 지역인재 육성
체계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과 지역 산업·연구기관
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인재양
성,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일자리 창출, 공용장비 활성화
및 지역혁신 사업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
로 제공할 수 있다.

제220조의5(대학 및 지역 동반성
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
자치도 설치에 따라 대학의 교
육·연구·산학협력 기능이 지
역 발전과 연계·확장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
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
육 혁신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 설>

제220조의6(특성화대학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미래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대학을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미래신산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20조의7(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특례) ①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
업예정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
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
력을 인정받은 사람

②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
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
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
는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
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
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
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
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

력개발 지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제주자치도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

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제주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와 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신 설>

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20조의8(국립대학교 지역거점 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실증 및 산학협력 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하여 어장, 양식장, 항만, 연안 및 해양보호구역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 시험·실증 및 재교육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연구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신 설>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제220조의9(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제주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
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220조의10(미래첨단산업 산학
협력 촉진) ① 도지사는 연구개
발, 산업기술 발전, 인재 양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업계와
대학 간의 협력(이하 “산학협
력”이라 한다) 선도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 등을 영위하는 기
관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집단
적으로 입주하였거나 입주하
려는 지역
2. 산학협력 관련 투자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치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신 설>

3. 그 밖에 산학협력 선도지구
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산학협력 선도
지구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
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
다.
1.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
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화
 3.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4.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
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
원 공동 활용
 5. 그 밖에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절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제234조의2(설립) ① 제주자치도
를 거점으로 세계적인 첨단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산
업의 지식 기반 발전을 주도할

<신 설>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과학기술원(이하 “제주과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주과기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34조의3(운영의 독립성 및 조

직의 특례) ①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② 제주과기원은 학문 간 장벽 없는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학과 또는 학부를 두지 아니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주과기원은 연구단위 중심으로 운영하며, 그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4조의4(임원의 구성 등) ①

제주과기원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회는 국제적 운영 역량

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제적 교육·연구 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 진흥 및 발전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 감사 선임과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4조의5(교원 및 연구원) ①

제주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 · 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한 경우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주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이 경우 연구원의 유형과 임용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주과기원은 교원 및 연구원을 임용할 때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수인력 유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수와 처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 설>

제234조의6(학위과정 등) ①

제주과기원에 박사 과정을 둔다.

② 제주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신 설>

위하여 외국인으로 구성된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비율이 각각 전체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 수여, 입학 자격 및 방법 등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4조의7(제주과기원에 대한 제

주자치도의 지원) ①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주거시설의 우선 공급, 의료·문화 지원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주자치도는 제주과기원의 산학협력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

<신 설>

<신 설>

하기 위하여 산학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주과기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연구원의 자녀는 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국제학교에 정원외로 입학하거나 우선 입학할 수 있다.

⑤ 제주자치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34조의8(출연금)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주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9(연구지원을 위한 출연금 특례) ① 국가는 제주과기원

<신 설>

<신 설>

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연구비 총액을 포괄적인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불구하고 사업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하며, 총장은 학칙에 따라 이를 연구단위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0(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과기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34조의11(기금의 설치 등) ① 제주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신 설>

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영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
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
육·연구 시설의 설치·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2(국유재산·공유재산
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제주과기원의 설립
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제주과기원에 국유재산, 공

<신 설>

<신 설>

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여, 사용허가 및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4조의13(개발센터의 지원 특

례) ① 개발센터는 제주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주과기원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조성 및 건축

2. 교원·연구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정주지원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제주과기원의 운영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채원 출연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과기원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234조의14(다른 법률의 준용)

제주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신 설>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원”은 각각 “제주과기원”으로 본다.

제244조의2(관광특구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제256조의2(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 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256조의3(국제행사 유치 지원)
정부는 G20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

<신 설>

OP33) 등 국제행사의 개최지로
제주자치도를 지정할 수 있다.

제266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
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5항에도 불
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
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및 기업유치,
입주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
보의 수집 및 제공
2.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지원
3. 문화산업과 신기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의 진흥
4. 문화산업진흥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
요한 각종 사업

<신 설>

③ 국가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3(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재정이 투입되거나 투입될 예정인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출연, 출자한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또는 해제 결과는 지체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에 따라 필요한

<신 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6조의4(문화재생특별회계 신설) ① 도지사는 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휴공간 및 시설 등을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제주자치도 문화재생특별회계 계정 신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94조의2(푸드테크산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의 동향과 발전 전망
3. 제주자치도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신 설>

<신 설>

4.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제294조의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정) 국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에 따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제주자치도에 지정할 수 있다.

제294조의4(푸드테크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

<신 설>

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관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294조의5(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정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의 권한으로 한다.

<신 설>

제294조의6(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특례)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4조의7(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

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
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
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
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
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
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하
려는 경우 미리 지역주민의 의
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 장과
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

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특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변경허가·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94조의8(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농업의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거나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

<신 설>

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농업기반 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농업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9(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선도지구를 지정

<신 설>

<신 설>

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0(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

<신 설>

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94조의12(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

<신 설>

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도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94조의13(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특례)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 또는 가축의 생육 및 질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

<신 설>

행하려는 경우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마련하거나 추진하는 시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4(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특례)

① 제주자치도의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종합 산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 및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를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의 조성을 위하여 수산식품가공, 연구개발, 유통, 창업 기

<신 설>

<신 설>

능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을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또
는 부문별 계획에 반영할 수 있
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전문단지 등의 조성에 필요
한 입지 확보, 인허가, 사업 절
차 간소화,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4조의15(고령 은퇴 농업인 연
금지 도입에 관한 특례) ① 제
주자치도는 은퇴하는 고령 농업
인을 위한 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수급 대상자, 수급 조건, 수
급액 및 기타 연금 제도의 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연금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6조의2(벤처기업 투자 및 정
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 설>

제주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운영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제296조의3(창업 집적 시범지구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창업 생태계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 집적 시범지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지정한 창업 집적 시범지구 내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신 설>

수 있다.

제304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04조의3(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제주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 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신 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4조의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
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
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
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
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
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신 설>

제304조의5(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
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
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
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운
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
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신 설>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4조의6(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304조의7(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녹지의 설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304조의8(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에서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 간 전력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구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라 한다) 내에 전력수

<신 설>

요 유치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배전 설비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주자치도 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축사업으로 확충된 전력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수요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망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4조의9(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으로 전력계통 포화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제주자치도의 지역에 대하여 전력계통 안정화 및 추가 연계를 위하여

<신 설>

필요한 송전·변전설비 확충, 계통관리설비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 종합적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계통포화 해소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사업자와 협력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계통포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 및 관계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04조의10(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 국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연계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계통안정화 장치(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포함한다)가 일반적인 발전설비와 달리 추가적인 설비비용 및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

<신 설>

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4조의11(신·재생에너지 이
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① 도지
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이익공유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
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
익공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
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공형·주민참여형 신에너
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이익공유 제도 운영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
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
익공유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역량 강화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기
술개발 및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
별회계의 조성·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익공
유 관련 사업

7.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수산업 보전 및 지역발
전 지원사업

제304조의12(신·재생에너지 공
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도지사는 공공기
관 등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이
공공성 확보, 주민수용성 제고
및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
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304조의13(지방공기업의 신·
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
행 한도 특례) ① 제주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
거나 관련 법인을 설립·운영하
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
업법」 제54조 및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 및 사채발행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출자 또는 사채발행 규모에 대하여 제한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사채발행을 하고자 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는 같은 법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2.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 및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

<신 설>

<신 설>

는 사업

제305조의2(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305조의3(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 구역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제주자치도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모빌리티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5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

AM) · 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 · 소재 · 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 · 생산 ·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 ·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 · 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신 설>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국가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5조의4(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 자치도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신 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305조의5(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관할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

<신 설>

행지구 지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6(산업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7(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녹색산업등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1.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 태양광 사용후 패널 자원순환 클러스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및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3.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

<신 설>

4. 그 밖에 녹색산업의 육성 및
집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 및 도지사가 필요하
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305조의8(그린바이오산업 데이
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그
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
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린
바이오산업의 연구·실증·산
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
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
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신 설>

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
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
터의 관리·활용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
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
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지상설치 지원) 국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

<신 설>

<신 설>

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제
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
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
전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제305조의10(수소산업 육성 및 지
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발전기반의 조
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
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 육성·지
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
스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
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수소산
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11(첨단산업 육성을 위
한 행정·재정 지원) 국가는 제
주자치도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드론, 반도체, 로봇 등
과 관련된 국방산업

2. 우주 방산부품·기기 산업

3. 우주발사체 등 첨단우주산업
의 육성

4. 바이오 혁신 신약·디지털헬
스케어 서비스 등 첨단바이오
헬스산업

5. 나노반도체 산업

6. 로봇산업

7. 모빌리티 무선통신·자율주
행 특장차 도로관리 서비스
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8. 수소연료전지·이차전지 산
업

9. 세라믹 산업, 첨단·희유소재
산업

10. 인공지능·가상융합산업

11. 코스메틱 산업

12. 원자력, 태양광 등 에너지

<신 설>

<신 설>

산업

13. 삼차원프린팅산업

14. 광융합산업

15. 해양융합산업

16. 500억 원 이상 대형 연구장

비산업

17. 그 밖에 도지사가 육성하고

자 하는 전략산업 및 신산업

제305조의12(드론특별자유화구역
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
부장관은 도지사가 「드론 활용
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
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
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305조의13(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
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
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광역 단위 클러스터(이
하 “인공지능 클러스터”라 한
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

여 구축·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 U 등을 말한다)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공지능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공지능 클러스터 내 시설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를 의제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14(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술·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제주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험·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제주자치도 전 지역을 연계하는 통합 교통·물류·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15(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

적·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
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
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
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
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
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
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
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
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
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
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
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16(인공지능 도시 실증 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인공지능, 에너지, 모빌리티 및 문화 융합 기술 등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인공지능 도시 실증지구(이하 “실증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이 경우 실증지구에 관하여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③ 실증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디지털·지능형 광고물 및 공공정보 제공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제 특례

<신 설>

2.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교통

관련 규제 특례

제305조의17(인공지능데이터 산

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

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제주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

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

집·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

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

뱅크”란 인공지능 학습·추론

·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

한 데이터를 수집·정제·결합

·관리·제공하고, 개인정보 보

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

<신 설>

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5조의18(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

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
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
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실증·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
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
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
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
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
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2항
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

<신 설>

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 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05조의19(에이전틱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① 도지사는 모든 행정 프로세스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 반복 업무를 완전자동화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원 처리, 인허가 검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요 행정 업무에 에이전틱 인공지능을 배치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 설>

제305조의20(디지털 트윈 정책 시
물레이션) ① 제주자치도는 예
산 100억 원 이상의 주요 정책
결정 전 제주자치도 전체를 가
상화한 디지털 트윈 상에서 정
책 효과 및 부작용을 사전에 시
물레이션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가 보안망 내에서
도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기
반을 활용하여 민간의 최신 거
대언어모델(LLM)을 보안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한다.

<신 설>

제305조의21(미래자동차 부품산
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
업통상부장관은 제주자치도 관
할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
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
항 각 호의 단지·지구·지역으
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신 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2(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23(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 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3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5조의24(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

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제주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5조의25(우주산업 투자진흥 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05조의26(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제주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신 설>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5조의27(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 자치도에 과학기술·디자인·문화예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

<신 설>

입,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
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
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
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
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
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
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
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06조의2(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에 관한 특례) ① 이 조에
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인력·사업을 말한
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

행기관 및 책임의료기관과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
비·인력·연계체계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
· 증축·이전, 노후시설 개보
수 및 의료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기본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른 중증·응급·분만·소아·
정신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별 전문의료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난
· 응급의료,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하여 국
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공공병원 및
관련 기반시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취약지에 소재
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

화 및 장비·인력 확충 기반
사업

6.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장기 근무 유
도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연구·생활기반 등 지
원 사업

7.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의료취약지에 편
입·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

8. 「암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자치도 소재 지역
암센터의 시설·설비 등의 설
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
링 등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주
자치도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제1항에 따
른 공공의료 인프라 등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국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의료취약지의 병원 운영비 지원과 지역 의사·필수의료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종합병원 개설과 연계한 도시개발사업

<신 설>

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06조의3(지방의료원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306조의4(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06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신 설>

제340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

<신 설>

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반영할 수 있다.

제340조의3(제주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제주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

<신 설>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0조의4(제주특별자치도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지역 여건·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0조의5(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0조의6(청년지원정책 재정지

원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의 청년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주거 및 문화 향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신 설>

<신 설>

2. 청년 주거공간 지원

3. 기초생활인프라 및 문화·집
회시설 확충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청년유
출을 막고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6조의2(물순환 촉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물순
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물순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이 포함된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같
은 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촉
진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
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05조의2(우수 인재를 위한 주

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 설>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6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제주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426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신 설>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426조의5(국토외곽 먼섬 주민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내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물류비 지원
2. 의료·교육·돌봄 서비스 지원
3. 상수도·전력·통신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원
4. 주거환경개선, 귀촌·귀어 추진을 위한 주거·이주 지원
5. 그 밖의 국토외곽 먼섬 주민

<신 설>

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제426조의6(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점가 활성화 지원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 주말시장의 지원
 4.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
성·해제
 5.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6. 청년상인의 육성
 7. 빈 점포의 활용 촉진
 8. 상권활성화 지원
 9.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10.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제주 자치도 관할 행정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주자치도 전 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26조의7(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특례) 정부와 도지사는 시장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 따라 10년간 감면할 수 있다.

제427조의3(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한 특례) ① 사업구역이 제주자치도에 한정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3, 제49조의5부터 제49조의7까지, 제49조의13부터 제49조의15까지, 제49조의18 및 제49조의19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신 설>

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9를 적용한다.

제427조의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재정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2.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

<신 설>

<신 설>

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을 받은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
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가 이
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27조의5(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
도 관할구역 내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사업의 운임·요금의 경
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427조의6(여객자동차운송플랫
폼서비스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주자치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서
비스의 종사자는 서비스 수준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되며, 택시운수종사자
의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다.

<신 설>

②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조례의 내용이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39조의2(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신 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주자치도 내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39조의3(지방관리항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7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생 략) <u><신 설></u>	<u>1.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u> <u>2. 해상풍력 등 국가 대규모 사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3. 4·16세월호참사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 및 회복이 필요한 경우</u> <u>4. 그 밖에 항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의 대상, 비율,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6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주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